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36조 관련)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frac{\text{판매가격 합계액}}{\text{공급가격 합계액}}$$

공급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 합계액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재판매를 포함한다)한 재화등의 수량은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판매가격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다.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출고되거나 제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공급가격 합계액과 판매가격 합계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마.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에는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